

10. 宅地所有上限에關한法律施行令中 改正(案)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57號 1991. 12. 28

1. 개정목적

택지소유상한제를 운영하여 오던중 건축규제조치 등으로 이용·개발이 제한되는 등 '92년 실제부과에 대비하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규제조치로 건축허가가 되지 않는 택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에 대해서는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추가 인정토록 하는 유예기간을 연장함.

나. 개발제한구역안의 택지로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장의 부속토지 산정기준을 현재 일반주택

과 같이 별장 바닥면적의 7배로 하던 것을 별장 건축면적의 10배로 환대함.

다. 도시계획시설중 33종의 시설용토지를 나대지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현재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도 공공성이 크고 택지로서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용 시설 전체(47종)를 나대지에서 제외함.

라. 가구별 택지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 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봄.

마.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설영의 특혜를 받아 보세장치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는 동법에 의하여 타목적의 이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이에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수출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바.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현재 1월 이

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부기한의 완료시점이 불명확하므로 납부기한은 1월 이내로 하되, 부담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담보제공후 1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장·군수가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할 때 택지소유상한 초과여부를 확인토록 함.